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15
----------	------

제출년월일 : 2011년 4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정이유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음.
- 따라서 사단법인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또한,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사단법인 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충북도 문화예술과)에서 기허가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함.

2. 주요내용

- 영화제의 설립 목적 및 정관(안 제1조 ~ 4조)
- 영화제의 시행 사업(안 제5조)
- 영화제의 재산조성 및 재정 지원(안 제6조)
- 영화제의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안 제8조 ~ 9조)

3. 의안전문 : 불임

4. 기타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2. 23. ~ 3. 18. (24일간)
- 다. 201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수정가결

5. 관계법령 : 불임

- 첨 부 1. 의안전문 1부.
- 2. 관련법령 1부.
-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무소)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9. 집행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10. 영화제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개최
3. 제천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

4.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영화제의 재산은 정부 및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시는 영화제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화제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연도) 영화제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 등) 영화제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결산서 제출) 영화제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화제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영화제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리·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생략)

□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천시 공고 제 2011 - 230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3.

제 천 시 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음.
- 따라서 사단법인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또한,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사단법인 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충북도 문화예술과)에서 기허가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조례 제정을 권고함.

3. 주요내용

- 영화제의 설립 목적 및 정관(안 제1조 ~ 4조)
- 영화제의 시행 사업(안 제5조)

- 영화제의 재산조성 및 재정 지원(안 제6조)
- 영화제의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안 제8조 ~ 9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임명규(전화 641-5122, 팩스 641-5149)

★실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관광과장			
실무관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명

- ①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조례안
- ②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조례안
- ③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조례안

2. 공고번호

- ① 제천시 공고 제2011-228호
- ② 제천시 공고 제2011-229호
- ③ 제천시 공고 제2011-230호

3. 공고기간 : 2011. 2. 23. ~ 3. 18.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각 조례의 제정 조례안

6. 공고결과

- ① 홈페이지 조회 131회 / 의견 제시 0건
- ② 홈페이지 조회 122회 / 의견 제시 0건
- ③ 홈페이지 조회 146회 / 의견 제시 0건

7. 기타사항

- 의견 제시 : 제천시 의회 충완식 전문위원

- 각 조례의 업무위탁 규정이 사무의 구분과 표현이 불명확하고 비대상 사무도 위탁할 소지가 있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저촉 소지 있으므로 검토 필요

- 조치계획 : 의견 반영

-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2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 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2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조례안 제11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영화제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화제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조례규칙심의회시 반영 의결 추진

2011. 3. 29.

보고자 : 행정 7급 임영규

제천시장 귀하